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등〉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1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5.
3. 회부연월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분쟁 조정은 제외함)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면서 심의 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8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u><신설></u>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회의(분쟁 조정은 제외한다)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신 설>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위원회 ----- ----- ----- -----.
--	---

최근에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표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상품 판매매개자에게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표 2] 연도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단위 : 건)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126,542	171,606	181,131	198,853	225,841

자료: 특허청

이에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철규의원 대표발의¹⁾, 김정호의원 대표발의²⁾)이 발의되어 우리 위

원회에서 심사 중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제도’와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각각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상표권자가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한 서비스이용자(판매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요청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가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보 제공의 청구 관련 조문대비표

현 행	이철규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신 설>	제108조의4(정보의 제공)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8조의3(정보 제공의 청구) 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1) 의안번호 제2205684호, 2024. 11. 19. 발의

2) 의안번호 제2205802호, 2024. 11. 22. 발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요청 또는 제2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권리주장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요청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본 개정안은 김정호의원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동 상표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특허청장의 정보제공 명령’ 전에 정보제공의 당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제도’와 관련한 2건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 명령 청구에 대해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절차 규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철규의원안은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 명령 청구에 대해서 산업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김정호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권리주장자의 정보제공 명령 청구에 대해서 산업재산
권 분쟁에 관한 심의·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인 산업분쟁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인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제41조제1항³⁾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분쟁
조정사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과 ‘심의사항’(제6호)으로 구분하여 규
정⁴⁾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규정하는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에 관한 것은 ‘분쟁조정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6호에 각 목으로 추가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상표법」에도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

3)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
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제6호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월 30일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분쟁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표현하고 있음.

5) 이 경우 ‘「상표법」 제108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심의’와 같이 인용하는 법률의 항 단
위까지 명시함으로써 특허청장의 정보제공 명령에 대한 심의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허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⁶⁾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수를 한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직무발명,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심의·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최대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2025년 5월 현재 88명)될 수 있음.

[표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개요(제41조)

구 분	내 용
목 적	· 다음과 관련된 분쟁의 심의·조정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6) 다만, 「상표법」에 따른 정보 제공의 ‘심의’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구 분	내 용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수	15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위원 중 특허청장 지명
위 원	· 다음 중 특허청장이 위촉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⁷⁾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심의,⁸⁾ ② 위원회 운영세칙 제·개정⁹⁾ 등으로 한정적임.

「상표법」 개정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 제

7) 「발명진흥법」

제42조(조정부) 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8) 현재 다른 법령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특허법」 제109조), 반도체 배치설계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임.

9)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도'가 도입되는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소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와 같이 대규모 회의가 매년 개최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¹⁰⁾ 등 대규모 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일부 위원으로 한정하여 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문 의 처

02)6788-5458

10)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 ⑨ (생략)

11) 특허청도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